

창원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가단1170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형률

피 고 1. A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서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민건, 황진한

변 론 종 결 2023. 7. 12.

판 결 선 고 2023. 8. 23.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2,099,823원 및 그중 20,061,643원에 대하여 2022. 7. 5.부터 2023. 1. 5.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1. 8. 31.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부산지방법원 2021. 9. 2. 접수 제1141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기업은행 김해중앙지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원고는 피고 A의 위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대출은행에 발급하였다.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대출기관
2020. 5. 8.	C	20,000,000원	기업은행 김해중앙지점

나. 피고 A가 2021. 9. 8. 이자를 연체하는 등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22. 7. 5. 피고 A가 상환하지 못한 대출원리금 20,061,64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회수하지 못한 가 지급금은 1,992,920원이며, 추가 보증료는 45,260원이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2022. 1. 1.부터 연 8%이다. 다. 피고 A는 2021. 8. 31. 부인이었던 피고 B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하고, 전체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B에게 이전하는 취지의 재산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21. 9. 2. 접수 제1141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 을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부산연제구청,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하여(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위 기초사실 및 인정근거에 따르면, 피고 A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가지급금 등의 합계 22,099,823원(= 대위변제금 20,061,643원 + 가지급금 1,992,920원 + 미수보증료 45,260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20,061,64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2. 7. 5.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 A에게 송달된 2023. 1. 5.까지는 원고 적용 요율인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하여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577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인정근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 피고들은 1994. 7.경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21. 8.경 협의이혼을 하기까지 27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 피고 B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자녀 양육비,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협의이혼 당시 자녀들은 이미 성년이 되어 양육비가 필요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 A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으며, 협의이혼으로 피고 A가 피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증거도 부족한 점, ○ 피고들은 2015. 9. 25. 이 사건 부동산을 548,000,000원에 매수한 후 2015. 11. 30. 각 1/2 지분으로 이를 공하기 시작하였던 점(피고 B은, 피고 A가 매매대금 중 약 100,000,000원만을 부담하고, 나머지 448,000,000원은 피고 B이 소유하고 있던 부산 연제구 D아파트를 매도한 대금으로 지급한 것인데 편의상 각 1/2 지분으로 등기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피고 B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 A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는 인정된다), ○ 피고 B은, 피고 A가 혼인 당시 피고 B의 부친 E으로부터 신혼집 전세자금을 지원받거나 피고 B으로부터 2012년경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지원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는 등 피고 A가 혼인 중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피고 B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피고 B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 A는 2015년경 회사를 퇴사하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경제적인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반하여, 피고 B이 경제활동을 하여 직접적으로 혼인 중의 재산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한편, 피고 B은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F로부터 대출을 받은 300,000,000원을 피고 A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출금을 피고 A에게 송금한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돈을 피고 A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통해 피고 A는 채무만을 부담한 채 아무런 재산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를 앞서 본 피고들의 혼인기간, 혼인 중 취득한 재산 가액 및 기여 정도 등에 비추어 상당성 있는 재산분할약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미 피고 B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더욱이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었는데, 서울 강남구 G아파트 H호의 경우에는 피고 A가 2009. 3. 17.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B에게 2010. 2. 2. 그 1/2 지분에 관해서, 2017. 12. 8. 나머지 1/2 지분에 관해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피고

B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부동산이었다. 부산 부산진구 I 토지의 경우 피고 B이 2020. 1.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0. 4.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로서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특유재산이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 B의 선의 여부에 대하여

- 1) 이처럼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다고 보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참조), 수익자인 피고 B이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증명을 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증명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 2) 이에 대해서 피고 B은, 재산분할약정 당시 장기간 별거 상태에 있는 등 피고 A의 재산상황을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들이 법률적인 부부관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으로 인해 피고 A는 아무런 적극재산을 갖지 않게 됨에 반하여 피고 B은 별다른 부담을 지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법리에서 말하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으로 뒷받침하는 선의 증명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장재용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J에 있는 K건물 L동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M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및 철골트러스지붕

24층공동주택(아파트), 지하대피소

1층 603.244㎡

2층 603.244㎡

3층 603.244㎡

4층 603.244㎡

5층 603.244㎡

6층 603.244㎡

7층 603.244㎡

8층 603.244㎡

9층 603.244㎡

10층 603.244㎡

11층 603.244㎡

12층 603.244㎡

13층 603.244㎡

14층 603.244㎡

15층 603.244㎡

16층 603.244㎡

17층 603.244㎡

18층 603.244㎡

19층 603.244㎡

20층 603.244㎡

21층 603.244㎡

22층 603.244㎡

23층 603.244㎡

24층 603.244㎡

지하2층 500.158㎡

지하1층 581.132㎡

부속건물

1. 조적조 평스라브 및 철골트러스지붕 통합경비실 55.440㎡

2. 조적조 평스라브 및 철골트러스지붕 경비실 12.600㎡

3. 철근콘크리트라멘조 평스라브 및 철골트러스지붕 지하1층 다목적실
124.264㎡

1층 보육시설 277.430㎡

2층 노인정, 문교 281.400㎡

3층 관리실, 입주자회의실 281.400㎡

4.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및 철골트러스 지붕 지하3층 전기실, 펌프실
404.140㎡

5.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및 철골트러스 지붕

지하2층 지하주차장 8128.090㎡

지하1층 지하주차장 5997.183㎡

1층 계단실 45.900㎡

6.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및 철골트러스 지붕

지하2층 지하주차장 5903.036㎡

지하1층 지하주차장 5903.036㎡

1층 계단실 15.300㎡

7.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및 철골트러스 지붕

지하2층 지하주차장 6326.719㎡

지하1층 지하주차장 5256.423㎡

1층 계단실 76.50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3층 N호

철근콘크리트조 121.06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부산광역시 연제구 J
대 36478.6㎡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36478.6분의 46.583

중 공유자 B 지분 2분의 1 전부(갑구 25번) 끝.

1) 청구취지에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문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성격상 채무자인 ‘피고 A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표시하였다.